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3. 3. 6.

제1차 개정 2024. 3.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1조의9(경험학습 학점인정)에 의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라이프대학장으로 하며, 미래라이프대학 소속 학과별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간사는 미래라이프대학 교학지원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3.14.]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2. ‘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군 복무 기간 중 교육훈련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근무한 사실에 따라 인정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4. 봉사활동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5. 평생 직업교육과 관련된 선행경험학습인정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제5조(학점인정 신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며, 학점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근거자료
3. 과목별 선행학습경험 인정 신청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2호 서식]
4. 직무기술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삭제 (2024.3.14.)

제7조(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칙 (기획예산팀-554, 2023.03.06.)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693, 2024.03.14.)

이 규정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직무기술서(근무경력)

신청자	성 명		학과/계열	
	학 번		생년월일	
직 무 명				
교육이수 내역	교육기관명	교육명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운영 기관정보	교육기관명	주소	연락처	
직무경험 (※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	직무내용 (직무개요)			
	교과목과의 관련성			
	직무경험 시기 및 빈도			
	직무숙달 정 도			
	직무수행시 고려사항			